

『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8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8월 26일

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환경,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
따라 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조정하고,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

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필요시 위원을 임시적으로 임명 및 위촉(안 제2조)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)
- 소위원회 구성을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확장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-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개정(안 제2조, 제11조,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개정(2007.01.02)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이 폐지되고 조직 개편(2007. 08. 24) 및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환경,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(안 제2조)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필요시 위원을 임시적으로 임명 및 위촉토록 함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의
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3조)
- 소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(안 제8조)
전문성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
- 조직 개편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
(안 제2조, 제11조, 제14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
(개정 2007. 01. 02) 및 기타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
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
- 환경, 기계, 전자제어 등 특수기술부분과 기타 다양한 분야에
대한 자문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을 50명 이내
에서 70명 이내로 조정하고, 소위원회 구성도 15인 이내에서
2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서 설계자문 위원회의 내실있는
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